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39
----------	-------

발의연월일 : 2022. 12. 29.

발의자 : 정우택 · 박덕흠 · 이명수  
윤창현 · 최승재 · 이종성  
최영희 · 조수진 · 서정숙  
허은아 · 김형동 · 엄태영  
이종배 · 이상섭 · 지성호  
김학용 · 도종환 · 변재일  
김기현 · 윤주경 · 조은희  
임호선 · 안철수 · 최춘식  
이성만 · 김용판 · 박성민  
권은희 의원(28인)

### 제안이유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2021년 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실효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정책적 지원과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지역이 되어 타 지역으로 확산 · 과급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교두보

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의 동·남해안시대,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의 서해안시대에 이은 중부내륙시대를 열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백두대간 및 호수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비수도권 중에서도 중부내륙지역은 내륙 깊숙이 위치해 수도권 확장에 따른 수혜나 해안권 개발전략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지역임. 또한 이 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접근성 부재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 이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음.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부내륙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인 환경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인접 시·도가 많은 이점을 살려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고 도로·철도 등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화를 위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시·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8조).
- 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접 시·도간의 연계·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안 제20조).
- 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도(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란 제5조의 발전종합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 인접 시·도간의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지구로서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발전종합계획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
3.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  
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호소·하천·산림 등 자연생태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및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산업진흥 및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저수지·댐, 하천 등의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댐 저수구역 내 유휴지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및 국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
8.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  
충에 관한 사항
9.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임업·어업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  
로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등 인구  
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등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 환경의 체계적 보전·이용과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 전망
2.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 정비 및 이에 대한 행

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활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구 설

치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방안

6.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의 수립 및 시  
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  
· 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 · 생태적 보전 · 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  
다.

⑤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  
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시 · 도지사는 제5조제7항  
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 · 적정성 · 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둈다.
-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협의회를 둔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을 둔다.

-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사업의 시행 등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 관할 시장

· 군수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 관할 시·

도지사

3. 해당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입목별채등의 허가 · 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 협의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 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8.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 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  
정비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  
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3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3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  
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  
조에 따른 건축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  
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3조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5항 및 제8항  
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3조제5항 및 8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제16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 · 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과 도로·철도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환경기초시설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7. 「하천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제20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내륙 연계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산림보호법」 제9조,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의 증축·개축·재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등

제23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